



의안번호	제 2021 - 16호
보 고 연 월 일	2021. 6. 7. (제110차 정기회의)

의
결
안
건

제8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
수정 대상범죄 등 선정의 건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1. 의결 주문

제8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범죄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8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등 선정의 건」을 의결하여 제8기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수정할 대상범죄를 선정함으로써 범죄별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하고 관련되는 구체적 쟁점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제8기 양형기준 설정, 수정 대상범죄 선정 시 고려사항

- 양형기준 설정, 수정의 필요성
- 범죄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
- 범죄의 발생빈도
- 제1기 내지 제7기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의 관련성 등

나. 제8기 양형기준 설정, 수정 대상범죄 선정 관련 전문위원 논의 결과

- 토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구분	주제	포함 자치 전문위원 /의견 표명 전문위원
1 전체 범죄군에 결친 양형기준 설정·수정	1-1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10/11
	1-2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10/11
	1-3 치사 범죄에 대한 형량범위 재검토	2/11
2 개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	2-1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11/11

죄군	2-2 관세범위반범죄	11/11
	2-3 부동산투기범죄	3/11
	2-4 군사기밀누설범죄	2/11
3 개별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 죄군	3-1 아동학대범죄	11/11
	3-2 교통범죄	9/11
	3-3 균형법상 폭력범죄	6/12
	3-4 성범죄	5/11
	3-5 지식재산권범죄	4/11
	3-6 뇌물범죄	4/11
	3-7 유사수신 행위범위반범죄	3/11
	3-8 인신매매범죄	2/11

별지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범죄

제8기 양형위원회는 전체 범죄군에 걸친 양형기준 설정·수정으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를 진행함

제8기 양형위원회는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군, 관세법위반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함

제8기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군, 교통범죄군, 성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함